

2025.4.24.(목) 10시 30분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.

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(안)

2025. 4. 24.



환 경 부

||| 목 차 |||

I . 수립 배경	1
II . 3대 방향 및 체계	3
III . 세부 추진과제	4
①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	4
②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 · 관리	7
③ 똑똑한 정보관리 · 업계 협력	9
IV . 향후 계획	12

I. 수립 배경

- ◆ △먹는샘물 시장 확대, △기후 위기에 대응하여,
⇒ 먹는샘물의 **안전성 제고**와 **지속가능한 지하수** 보전·활용 추진

□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온 먹는샘물

- 먹는샘물 시장은 '95년 등록·관리제도 최초 도입 이후 지속 확대, 이제 국민의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*
- * 먹는샘물 음용 비율 '24년 34.3%, 국내 시장규모 '18년 1조원 → '24년 3.2조원
- 시장 확대에도 안전 불안 요인은 상존('22년 감사원 감사 등)

⇒ **그간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에 더하여, 먹는샘물 안전 관리 강화 필요**

□ 기후위기 시대,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필요성 대두

-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 등 빈발*,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 증가
- * 광주·전남 역대 최장기간('23년, 281.3일) 가뭄 발생 등 가뭄 빈도·강도 심화 추세
- 샘물 개발 증가*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, 지역 갈등 발생
- *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허가량 '16년 4.3만톤 → '24년 6.4만톤

⇒ **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, 먹는샘물 개발·허가·관리제도 개선 필요**

□ 먹는샘물 시장의 투명성·책임성을 높여야 할 때

- 먹는샘물 정보 산재(민간통계, 누리집, GIS 등)와 산출 수단(국가통계) 부재 등으로 대국민 정보전달 및 정책 수립시 활용에 한계
- 플라스틱 저감(질소 충전, 무라벨, 재생원료 사용 등) 등 업계 차원의 자발적 ESG 경영 확산 필요

⇒ **똑똑한 정보관리와 업계 협력을 통한 투명성·책임성 제고 필요**

[참고] 먹는샘물 시장 현황

□ (시장) 소비트렌드 변화(온라인 유통 등)에 따라 국내·외 먹는샘물 시장은 지속 확대 중으로, 국내 시장규모는 약 3.2조원('24년, 유로모니터)

※ 전 세계 먹는샘물(Bottled Water) 시장 규모 매년 9.2% 성장, '30년 약 5,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예측('24년 PRECEDENCE RESEARCH, 加 시장조사기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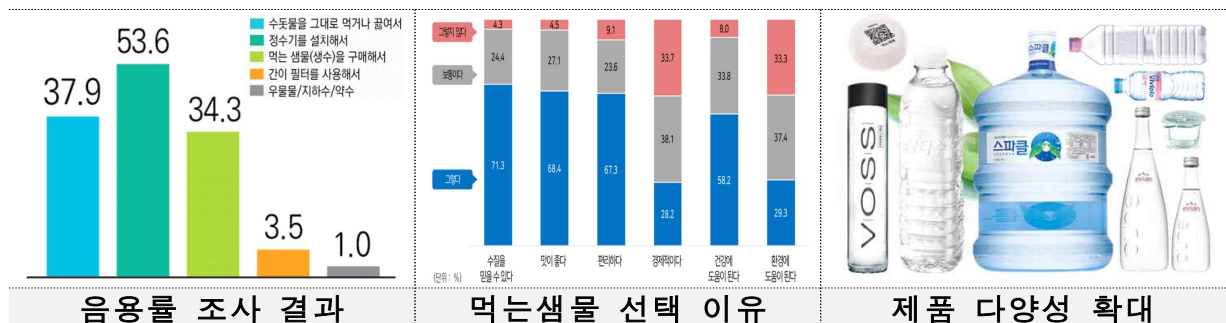


□ (먹는 비율 증가)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('24) 결과, 먹는샘물 구매·음용 비율이 '21년 대비 1.4%p 상승(32.9% → 34.3%)

※ 먹는샘물을 선택한 주요 이유는 “안전해서”(43.3%), “편리해서”(30.2%), “맛이 좋아서”(9.4%), “건강에 좋아서”(9.1%) 順으로 조사

□ (제품 다변화) 주문자상표부착생산(OEM) 활성화, 온라인 시장 확대, 차별화를 위한 용량·규격 다양화 등 제품 선택의 폭 확대

○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표시방법 확대(병마개라벨, 무라벨 QR코드) 등 업계차원의 ESG 경영 노력도 지속



II. 3대 방향 및 추진체계

방향	「안심」 하고 마시는 먹는샘물
	「지속가능」 한 지하수 관리
	「똑똑」 한 정보관리와 「민·관 협력」



추진 과제	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국제 수준의 품질·안전 인증제도 도입 ② 온·오프라인 유통 관리 강화 ③ 샘물·먹는샘물 수질관리 개선
	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·관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환경영향조사 및 심사 실효성·전문성 강화 ② 샘물 개발 제도 합리화 ③ 샘물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
	먹는샘물 투명성·책임성 제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신뢰성 있는 먹는샘물 통계 마련 ②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활성화 ③ 먹는샘물 업계 협력·지원 확대



배경	안전성 우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통합적인 품질·안전 기준 및 점검 체계 부재 · 부적절한 유통관리 지적, 미량물질 위해가능성 등
	지하수 갈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샘물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 지속 · 먹는샘물 제조공장-지역주민 간 갈등 발생
	정보 관리· 협력 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먹는샘물 정보 산재 및 국가차원의 통계 부재 · 업계 차원의 자발적 기여 확산을 위한 협력 필요

Ⅲ. 세부 추진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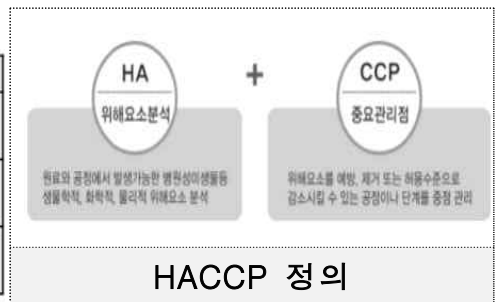
1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

□ 배경 및 현황

- (관리체계) 통합적인 품질·안전 기준 및 점검 체계 부재, 먹는샘물 전 과정(시설, 제품, 유통 등) 관리 및 품질의 상향평준화 도모 필요

< (참고) 국내외 품질·안전 관련 인증제도 >

구분	인증기관	주요 내용
HACCP (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)	식품의약품안전처	식품 생산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분석·통제
ISO 22000 (식품안전경영시스템)	ISO	HACCP 원칙과 ISO 9001의 경영체계를 통합
정수기 품질검사(KC)	한국물기술인증원	정수기의 구조, 성능, 소재의 안전성 평가



- (수질) 원수 및 용기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미량오염물질*에 대한 유해 가능성 제기 지속

* 미세플라스틱, 과불화화합물(PFAS), 아세트알데히드 등

- (유통) 직사광선 노출에 따른 유해물질 검출(아세트알데히드, 안티몬 등) 우려*, 모호한 유통·보관 기준 등 실질적 계도 장치 부재

* (감사원 먹는물 수질관리 실태감사, '22년) 야외, 자외선 노출 장소 등 보관 지적

보도자료
2022. 9. 14. (수) 보도일시 2022. 9. 14. (수) 14시 이후
계 경 총무담당장관(980-2011-2491) 담당부서 국토·환경질서국 제3과 3층 34호

「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」 감사결과
「어슬하게 발견된 수질감사상처서 17건 전, 위생관리가 부실한 일부 대형건축물 저수조, 직사광선 대비가 부족한 PET병 생산 유통·관리체계 등 지적」

I. 감사대상 개요
다 환경부는 「먹는 물 관리법」 등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먹는 물의 수질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등 관련 사업자를 관리
○ 그러나 인천 서구에서 10, 5회 5중 수돗물이 공급되고, 20, 7회 말바구 유출이 발견되는 등 수돗물 수질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
* 국회에서도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먹는 물 수질관리 감사 실시 필요성론 제기
- 또한, 먹는 샘물(정수) 업체에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KC(2013-1003) 일테에 관한 아사제 수질기준 부재(2020),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의 기준
○ 이에 감사원은 '21. 9. 20, 21년 11, 12.까지 환경부, 국립환경과학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「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」 감사를 실시

22. 9. 14. 국토·환경질서국의 제3과 3층 34호, 주무관(980-2011-2491)의 위임
국립환경과학원 제2과 24호, 감사담당관의 위임, 감사 결과문, 기록,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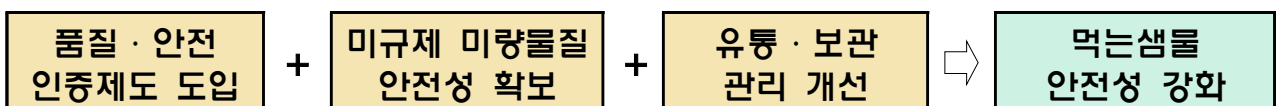
감사원 보도자료 ('22.9.14.)

식수서 미세플라스틱 상당히 심각한 상황

미세플라스틱 검출 보도 ('24.1.20., KBS)

미규제 미량물질 조사 (국립환경과학원)

□ 개선 방안



[먹는샘물 품질·안전 인증제도^(가칭) 도입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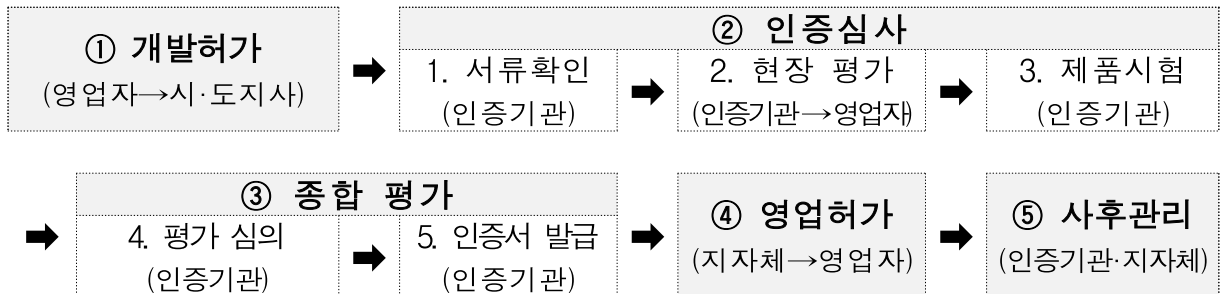
- (인증제도 도입) 국내 HACCP을 바탕으로 ISO 22000 등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·안전 인증제도^(가칭) 도입(~'27) **법**
- ①제조공정의 단계별 안전관리기준 수립 및 위해요소 분석,
②위험 예방관리체계 구축 등 평가요소 마련(~'25년, 제도안 마련)

⇒ 제도(안) 마련('25년) 후 업계 도입(재량) 추진

< 먹는샘물 인증제 도입 연차별 로드맵 >

기획('25년)	시범도입('26년)	도입('27년)	고도화('28년 ~)
산업 현황 분석, 국내·외 사례 연구 위해요소 및 품질기준 설정 인증 평가 시스템 마련	시범사업 추진 교육·훈련 프로그램 개발 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	인증제도 법제화 추진(법령 개정) 정기검사 등 사후관리 강화 인증제도 홍보 및 소비자 신뢰 구축	제도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 국제표준 연계,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

< 먹는샘물 품질·안전 인증 체계(안) >



[온·오프라인 유통 관리 강화]

- (보관 기준)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 등을 위한 보관기준 구체화*(~'25) **고시** 및 처벌규정 합리화(벌금 → 과태료) 등(~'26) **법**
- * 현재는 '적정한 방법으로 보관'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모호 → 구체화 필요
- (유통업 관리)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제조업체 위생점검 의무화,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보고 의무 부여(~'26) **시행규칙**
- 유통전문판매업자 유통관리계획서(제품 포장·보호, 운송차량 운행 등) 제출 의무화 및 지도·점검을 통한 이행 확인 등(~'26) **시행규칙**

- (온라인 유통관리) 온라인 모니터링 및 위반제품(구매대행 등) 판매 차단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속('23~)
- (공표기간 합리화)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해 **영업자 행정처분 사실에 대한 공표기간 정비***(~'25) **지침**

* △판매된 제품 전량의 회수·폐기 완료 여부 파악 한계, △영업정지기간동안 업체 처분사실 확인 어려움 → 공표기간 개선을 통한 소비자 알권리 확대 필요

구 분	현 행	개 선 안
회수·폐기	회수·폐기 종료일	처분일로부터 제품의 유통기한
영업정지	영업정지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	처분일로부터 정지기간의 2배
영업장 폐쇄	폐쇄 종료일	처분일로부터 2년

[**생물·먹는생물 수질관리 개선**]

- (미규제물질 관리 강화) 미세플라스틱,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**조사 확대***, 기준 마련 필요성 지속 검토('25~)

* 기존 국내제품 → 수입제품 포함, 미세플라스틱 표준분석 지침(FT-IR법, >20 μ m) 마련 및 초미세플라스틱(라만법, >1 μ m) 분석 역량 확보(~'26) 등

- 국제 측정방법 표준화 및 규제 강화 동향*, 위해성 검토 등을 토대로 전문가, 시민사회,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며 관리 필요성 검토('25~)

* (미국 과불화화합물 수질기준) 기존건강권고값 70 → 수질기준 4 ng/L(법적조치 '29년~)

- (수질기준 합리화) 인체 위해성, 해외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수(생물)와 제품수(먹는생물)에서 각각* 관리 중인 '**일반세균**' 기준*을 제품수 기준으로 **합리화**(~'26) **시행규칙**

*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(부령)」 별표 1 ▲원수(중온 5, 저온 20CFU/mL), ▲제품수(중온 20, 저온 100CFU/mL) 별로 각각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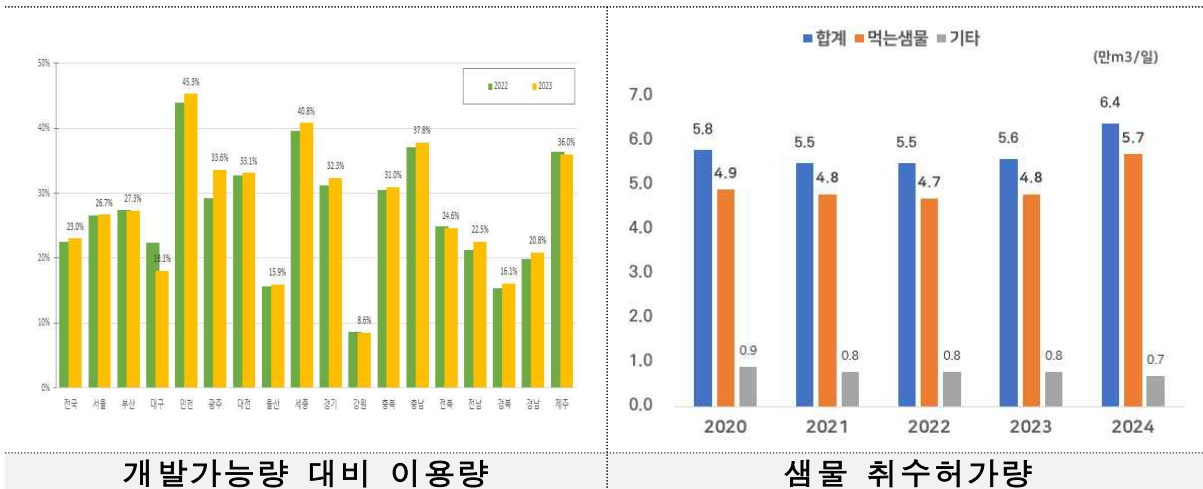
- (수질검사 내실화) '03년 이후 동결된 수질검사 수수료를 그간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 추진(~'26) **고시**

※ ('22, 감사원 감사) 수질검사 시, 보존료 미투입 등 절차 미준수 지적 및 처분

②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 · 관리

□ 배경 및 현황

- (지하수 이용량) 총이용량은 31.2억 m^3 로 매년 2~3% 증가 추세
 ※ (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) 전국 23.0%(31.2억 m^3 /135.4억 m^3)로 지자체별로는 인천(45.3%)이 가장 높고 강원(8.6%)이 가장 낮음
- (샘물 개발 현황) 취수허가량은 6.4만 m^3 /일이며 이 중 먹는샘물 제조용*은 5.7만 m^3 /일(89.1%), 음료류·주류 제조용은 0.7만 m^3 /일(10.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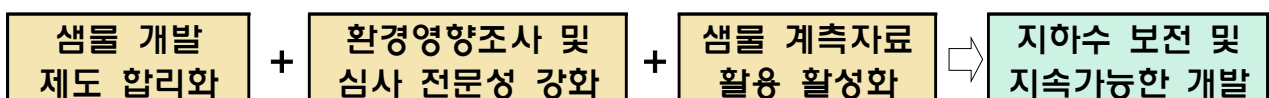


- (지역 내 갈등) 지하수위 하강, 지하수 고갈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, 지하수 개발·이용자 및 샘물 개발자 간 갈등 반복, 지자체의 불허가, 허가량 조정 등의 권한·절차 부족

< 지하수 고갈 관련 국외 사례 >

국 가	기 간	사 례
멕시코 (Chiapas)	1994 ~ 현재	제조업체가 100만 L/일의 물을 사용하여, 지역 수자원의 30% 이상 소모
인도 (Mehdigani)	1989 ~ 2009	11년 동안 지하수위 7.9 m 감소

□ 개선 방안



[환경영향조사 및 심사 실효성 · 전문성 강화]

- (양수시험 강화) 개발 허가 전 시행하는 단계양수시험 세분화 및 수위강하 기준 마련 등 양수시험 강화(~'26) **지침**
 - 양수시험 계획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한 전문가 사전검토 및 보완 절차 강화(~'26) **시행규칙**
- (심사절차 개선) 영향심사 분야 개선*, 적정취수량 평가시 수량 분야 전문가의 사전 정밀검토 실시(~'25) **시행령**
 - * 적정 취수량 및 수질 안전성 집중심사를 위해 '수량/수질'로 명확화
 - 환경청 심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 재심의 절차 등 개선 추진(~'26) **법**
- (조사대행자 관리) 조사 객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비용 표준품셈 제정(~'26) 및 실적보고 의무화 추진(~'27) **법**

[샘플 개발 제도 합리화]

- (절차 명확화) 본 개발 전 임시허가 용어 등 명확화*(→(가칭) 환경영향조사 착수 신고), 난개발 방지를 위한 변경신고 대상 정비 (~'26) **법**
 - * '임시허가' 제도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취수를 승인하는 사항이나, 현장에서는 샘플 등의 개발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명칭 등 명확화 필요
 - 샘플 신규개발 및 개발 종료시 「먹는물관리법」에도 「지하수법」에 따른 굴착신고 및 원상복구 등을 이행토록 명시*(~'26) **법**
 - * 현재도 「지하수법」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있으나, 현장혼선 방지를 위해 명확화
- (지자체 역할 확대) 지하수 보전을 위하여 샘플 개발 임시허가·허가 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반려·제한·불허가 근거 등 마련(~'26) **법**
 - 환경영향심사 시 지방환경관서 관내 지하수 관리 현황 등에 관해서 지자체의 자료·의견 제출 및 협의(↔지방환경관서) 권한 추가(~'26) **법**

[샘플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]

- (수위·수량 관리) 취수정 지하수위 저하 관리를 위한 취수정의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(~'28) **시행규칙**
 - ※ (허가 전) 양수시험 시, 취수정 및 관측정에서 수위강하를 측정하여 적정 취수량 산정 → (허가 후) 취수정에서 수위를 측정하지 않음
 - 지하수위에 영향이 있는 경우 취수를 제한·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, 향후 연장허가 적정성 판단 시 활용 추진(~'28) **법**
 - 기타샘물(주류·음료류 등) 개발자의 취수량 계측자료 월별 보고 의무화(現 분기별) 등을 통한 수량 관리(~'28) **법**
- (분석 의무화) 지하수위 저하 등 우려시 샘플 계측자료 분석 의뢰 (시·도지사 → 전문기관) 의무화 추진(~'26) **법**
 - ※ 샘플 계측자료 분석결과는 향후 연장허가 적정성 판단 시 활용토록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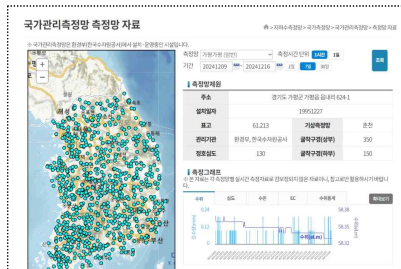
3) 똑똑한 정보관리·업계 협력을 통한 투명성·책임성 제고

□ 배경 및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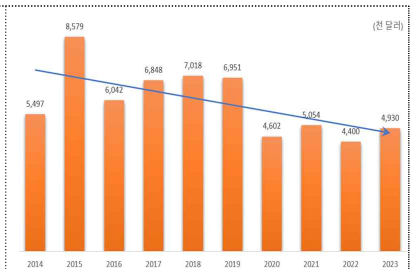
- (정보 관리) 먹는샘물 관련 정보의 산재, 산출 수단(국가 통계) 부재 등으로 대국민 정보전달 및 정책 수립시 활용에 한계
 - 실시간 정보시스템 부재로 샘물의 취수정·감시정 자동계측자료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지하수 수위 저하 등 적기 대응 한계
- (수출 현황) 최근 10년간 먹는샘물 수출액 감소 추이, 산업현황 분석을 통해 감소 원인 검토 필요

< 통계 현황 >

구분	주요 통계
환경부 누리집	먹는샘물 업체 현황
지하수 조사연보	먹는샘물용 지하수 시설, 이용량 현황
물산업 통계	업체 대표자 성비, 조직형태, 사업체, 종사자 수, 매출액 등
토양지하수 정보센터	먹는샘물 업체,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현황



지하수측정망 실시간 자료 (국가지하수정보센터)



먹는샘물 수출액 (관세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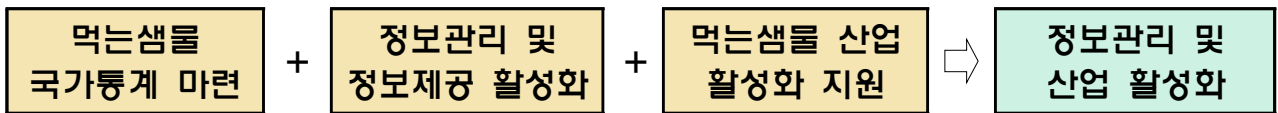
- (업계 노력) ESG 경영 동참을 위한 플라스틱 저감(질소충전, 무라벨, 재생원료 사용 등) 등 업계 차원의 자발적 기여 확산 필요

< 업계 용기 경량화 사례 >

업체명	경량화 현황	감축 효과
롯데칠성음료(주)	- 200mL, 300mL : 10.5g → 9.4g, △1.1g('22.4월~) - 500mL : 13.1g → 11.6g, △1.5g('24.2월~) - 2L : 36.2g → 34.5g, △1.7g('24.2월~) - 500mL : 11.6g → 9.4g, △2.2g('24.10월~)(질소충전 도입)	1,266톤/년
스파클(주)	- 2L : 37.5g → 34.6g, △2.9g('22.5월~)	400톤/년
플무원샘물(주)	- 500mL : 12.1g → 11.1g, △1.0g('18.4월~) - 2L : 32.6g → 31.6g, △1.0g('23.3월~)	340톤/년
하이트진로음료(주)	- 500mL : 13.8g → 12.5g, △1.3g('24.3월~) - 2L : 37.8g → 36.4g, △1.4g('24.3월~)	349톤/년
해태에이치티비(주)	- 2L : 37g → 33g, △4g('25. 下~)	225톤/년

국내 최초 질소충전 먹는샘물 출시
(환경부-롯데칠성음료/ ~'24.10)

□ 개선 방안



[신뢰성 있는 먹는샘물 통계 마련]

- (법적 근거 마련)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가공 통계 생산을 통한 산업 동향 파악 및 정책 활용 강화(~'27) **법**
- 먹는샘물 통계 연보 발행(홈페이지 공개 등) 및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(지하수조사연보 등 연계) 등 통계 연속성 강화('25~)

[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활성화]

- (실시간 정보관리)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(GIMS) 內 샘물 측정자료 보고기능 구축 추진을 통한 자료 수집·관리체계 개선('25~)
- 측정자료 실시간 연계관리, 분석자료 입력기능 및 수량, 오염 등 정밀분석 Tool 도입 추진 등('25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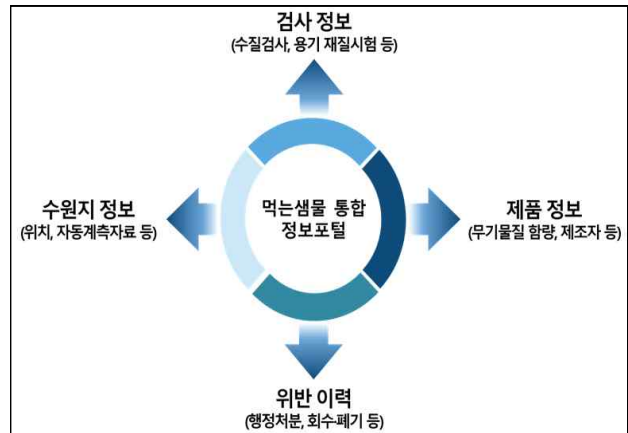
- (정보제공 활성화) 제품별 세부정보(수원지 등),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'먹는샘물 통합 정보포털' 구축('26~)

※ 국가지하수정보센터(GIMS) 내 별도의 먹는샘물 관련 메뉴 구축 등 연계·추진

< GIMS 연계·구축 계획 >

구분	주요 기능	이용자
1단계 (‘24~’26년)	자동계측자료 DB 구축, 측정자료 입력 기능(유지·보수 등)	시·도, 전문기관
2단계 (‘27~’29년)	자동계측자료 보고기능 구축, 관리 DB 확대	시·도, 전문기관, 제조업체, 지방청 등
3단계 (’30년~)	자동계측자료 실시간 전송체계 구축 및 분석기능 탑재	시·도, 전문기관, 제조업체, 지방청, 대행자 등

< 먹는샘물 통합 정보포털 구성(안) >



[먹는샘물 업계 지원 및 협력 확대]

- (위생 인증) 먹는샘물 품질·안전 인증제도(가칭) 연계를 통한 위생 증명서 발급제도 도입(~'28) **법**

- 인증기관·제조업체 간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취득(ISO, 미국 GMP 등) 지원 등('28~)

※ 코트라 수출기업 민원 상담 결과('22년 27,042건): ①바이어발굴(23.3%), ②인증·규격(19.7%), ③무역실무(19.1%), ④관세통관(16.9%)

- (수입절차 효율화) 우수수입업소 및 계획수입 제도 도입 검토*를 통한 절차 효율화 및 영업자 부담 완화(~'27) **법**

* (타 법령 사례)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등

- (실적보고 의무화) 산업실태 파악을 위한 먹는샘물 관련 영업자의 영업실적 보고 의무화 추진(~'27) **법**

※ (타 법령 사례)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61조제1항, 「화장품법」 제5조제5항 등

- (소통·협력 확대) 업계·지자체 건의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정기 간담회(반기별 1회) 및 세미나(연 1회) 개최 정례화('25~)
 - 업계 플라스틱 저감(질소충전, 재생원료 등 붙임2) 협력 및 대국민 소통·홍보 강화(계속)
- ※ 업종별/업체별 소통담당자 지정 및 연락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 소통 추진

IV. 향후 계획

- 관계기관, 업계,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'(가칭)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' 구성 및 추진현황 공유·의견수렴(계속)
- 구체적인 제도 기획·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도입·개선의 실효성과 수용성 담보

붙임 1

주요 과제별 추진일정

주요 세부과제	추진 일정	개정 사항
1.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		
① 먹는샘물 품질·안전 인증제도 도입		
① 먹는샘물 품질·안전 인증제도 도입	~'27년	법
② 먹는샘물 품질·안전 인증제도 고도화	'28년~	-
② 온·오프라인 유통 관리		
① 먹는샘물 보관기준 개선	~'26년	법 고시
②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자 관리	~'26년	시행규칙
③ 먹는샘물 온라인 유통관리	'23년~	-
④ 먹는물관련영업자 공표기간 합리화	~'25년	지침
③ 샘물·먹는샘물 수질관리 및 개선		
① 미규제물질 관리 강화	'25년~	-
② 먹는물 수질기준 합리화	~'26년	시행규칙
2.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·관리		
① 환경영향조사 및 심사 실효성·전문성 강화		
① 환경영향조사 양수시험 강화	~'26년	시행규칙 지침
② 환경영향심사 절차 개선	~'26년	법 시행령
③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관리	~'27년	법
② 샘물 개발 제도 합리화		
① 샘물 개발 절차 명확화	~'26년	법
② 지자체 역할 확대	~'26년	법
③ 샘물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		
① 샘물 수위·수량 관리	~'28년	법 시행규칙
② 샘물 계측자료 분석 의무화	~'26년	법
3. 똑똑한 정보관리·업계 협력을 통한 투명성·책임성 제고		
① 신뢰성 있는 먹는샘물 산업 통계 마련		
① 국가통계 법적근거 마련	~'27년	법
② 먹는샘물 통계연보 발행	'25년~	-
②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활성화		
① 먹는샘물 자료 수집·관리체계 개선	'25년~	
② '먹는샘물 통합 정보포털' 구축	'26년~	-
③ 먹는샘물 업계 지원 및 협력 확대		
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	~'28년	법
② 수입절차 효율화	~'27년	법
③ 영업자 실적보고 의무화	~'27년	법
④ 업계·지자체 소통·협력 확대	'25년~	-

붙임 2

먹는샘물 업계 개선 사례

< 취수원 관리 >



제주개발공사 인공지능(AI) 기반 제주삼다수 취수원 수자원통합정보시스템(i-SGMS) 구축·운영

< 무라벨 제품 생산 >

< 용기 경량화 >

업체명	경량화 현황	감축 효과
롯데칠성음료(주)	- 200mL, 300mL : 10.5g → 9.4g, △1.1g('22.4월~) - 500mL : 13.1g → 11.6g, △1.5g('24.2월~) - 2L : 36.2g → 34.5g, △1.7g('24.2월~) - 500mL : 11.6g → 9.4g, △2.2g('24.10월~)(질소충전 도입)	1,266톤/년
스파클(주)	- 2L : 37.5g → 34.6g, △2.9g('22.5월~)	400톤/년
플무원샘물(주)	- 500mL : 12.1g → 11.1g, △1.0g('18.4월~) - 2L : 32.6g → 31.6g, △1.0g('23.3월~)	340톤/년
하이트진로음료(주)	- 500mL : 13.8g → 12.5g, △1.3g('24.3월~) - 2L : 37.8g → 36.4g, △1.4g('24.3월~)	349톤/년
해태에이치티비(주)	- 2L : 37g → 33g, △4g('25. 下~)	225톤/년

< 질소충전 도입 >

롯데칠성음료(주) 플라스틱 127톤/년 감축

< 빈병 회수 및 재활용 >

스파클 플라스틱 1,500톤/년 감축

< 재생원료 사용 >

업체명	적용 제품	사용 비율
롯데칠성음료(주)	- 아이시스 8.0 ECO (1.5L) ('23.3월~)	10%
스파클(주)	- 스파클 (0.33L) ('24.9월~)	10%
산수음료(주)	- re 가벼운샘물 (0.5L) ('24.9월~)	10%